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가〉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1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가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 ----- ----- ----- --.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태양광 설비(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허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한정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²⁾에서 그 사업범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아 농어업법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³⁾에 한하여 영농조합법인 소유 건축물의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은 농촌에서 농지가 아닌 기존 건물의 유휴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용지의 제약을 극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농촌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공익적 기능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생략)

3)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약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지의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조화롭게 병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이는 정부는 산단·공장 지붕, 학교, 주차장 등과 같은 국민 일상공간에서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⁴⁾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에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의 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⁵⁾을 입법예고(2025. 6. 19.~2025. 8. 5.) 한 바 있음.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평균소득은 5,060만원으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전체 가구 평균소득 7,185만원 보다 현저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서면 업무보고 자료, 2025.12.17

5) 참고자료 1

히 적은 수준임.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통하여 지방 소멸 대응이 가능하며, 농촌지역 소득 보전 측면에서 영농을 하면서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주 사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영농조합법인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확정 이익금 및 판매 수입은 영농조합법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짓고 이를 활용한 발전수익의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

6) 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슈와 논점 2187호, 2024.2.5.

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과 무관한 사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하나의 법인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이 운영되므로 공통비용에 대한 명확한 회계 구분과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⁷⁾에 따라 농업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동일 법인 내에서 농업소득과 발전소득이 병존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별 수익 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구

7)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분하지 못할 경우 과세소득 계산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투명한 회계구조 마련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업법인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 수익은 불허하고 자가생산한 태양광 전력 중 잉여전력 판매는 허용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5

참고1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① (생략) 1. <u>농업의 경영</u> 2. <u>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u> 3. <u>농작업의 대행</u> 4. <u>농어촌관광휴양사업</u> 5.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u>다음 각 목의 주사업</u> 가. <u>농업의 경영</u> 나. <u>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u> 다. <u>농작업의 대행</u> 라. <u>농어촌관광휴양사업</u> 마.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u>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u>말산업 육성법</u>」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아.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
우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은 가축분뇨 재활
용 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처
리업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
·공급 사업(기술력과 보급실
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농
업회사법인만 해당한다)

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의 거래(농업법인 소유
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1
천kw 이하의 자가용, 일반용 발
전설비로써 전력 매출액은 총매
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농업법인의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관
련된 연구개발 사업(제1호가목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u>또는 나목의 사업에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u> <u>차. 영농에 필요한 경영·기술의 교 육·컨설팅 사업(제1호가목 또 는 나목의 사업에 부수적으로 영 위하는 경우를 말한다)</u> <u>카. 그 밖에 농업·농촌의 가치 제 고,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 법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 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	--